

# SPA 형사소송법 1 · 2쇄 정오표(개정법 반영)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2013.4.5)이 있었습니다.

특히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의 실제 적용영역은 형사소송법 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관련부분 및 기타 정오사항을 추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97 19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 고소기간은 1년(제19조) 10. 경찰승진’를 삭제
- p.97 24행 관련판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 분명하다(대판 2002.5.16, 2002도51 전원합의체).’를 삭제
- p.99 4행 ‘④ 결혼목적 약취 · 유인죄 ~ 진행된다(제230조 제2항).’를 삭제
- p.101 2행 ‘ⓐ 단순일죄의 경우 : 단순일죄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아래에 다음 예를 추가한다.  
예 수개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친고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부의 행위만을 고소한 경우에 그 고소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든 행위 전부에 미친다.
- p.101 표 첫째칸 ‘동일 피해자에 대한 ~ 고소 또는 취소로서 효력이 있다.’의 아래에 다음 예를 추가한다.  
예 동일 피해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친고죄)와 모욕죄(친고죄)가 상상적 경합한 경우에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체범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p.101 박스 셋째칸 ‘동일 피해자에 대한 ~ 친고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의 아래에 다음 예를 추가한다.  
예 모욕죄(친고죄)와 감금죄(비친고죄)가 상상적 경합하는 경우 감금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모욕죄에 미치지 않는다.
- p.119 53번 내용과 해설 전체를 삭제한다.
- p.133 문제 18번 해설 ‘② 대판 2002.5.16, 2002도51 전원합의체’ ⇨ ‘② 대판 2002.5.16, 2002도51 전원합의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제는 실의이 없는 판례이다)’로 교체
- p.179 문제 17번 해설 ‘④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의 3 제7항’ ⇨ ‘④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의 3 제7항(동법은 폐지되었고, 본 내용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7항에 규정되었다.)’로 수정
- p.241 15행(관련판례 2)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2. 2. 23. 선고, 2009헌마 333)에 따라 앞으로는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이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서신을 제출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함(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p.253 표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구별 부분의 차이점 중 “• 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 •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을 공통점으로 이동

p.324 16행(①②내용) 아래에 다음 판례를 추가한다.

▶ 관련판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12.11.15, 2011도 15258).

p.407 9행 '강간에 대하여 ~ 공소제기'를 삭제

p.407 20행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러나 강간죄 등 각종 성범죄가 이제는 친고죄에서 일반범죄로 전환(2013. 6. 19. 시행)되었으므로, 종래의 판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p.411 7행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제1항'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으로 수정

8행 '2.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죄 ⇨'를 '2.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로 수정하고, '(동법 제7조의 3 제2항)'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으로 수정

10행

- 3. 13세 미만 ~ 여자에 대한 강간 · 준강간 ⇨ 공소시효적용 × (동법 제7조의 3 제3항)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 ▶ 3. 13세 미만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 4. 추가
    - ▶ 4.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범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 공소시효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p.505 4행 '① 피고인이라 함은 ~ 피고인에 포함된다.'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① 피고인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받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도 피고인이 된다. 또한 즉결심판절차에서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에 의하여 시 · 군법원에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도 피고인에 해당한다(즉결심판절차법 제3조).

p.701 7행 '④ ~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제시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를 '④ ~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동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로 수정

p.706 7번 해설 ' ~ 장기 10년 이상의 ~ '를 ' ~ 장기 10년이 넘는 ~ '으로 수정

p.727 24행 '1. ~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를 ' ~ 제7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로 수정

p.727 25행 '2. ~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를 ' ~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및 제17조 제1항까지 ~ '로 수정

p.751 08번 기출표시(11.경사승진)와 해설을 모두 삭제하고,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① × : 성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일반범죄가 되었다.

② ○ : 이제는 일반범죄로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② ×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을 녹화장치로 촬영 · 보존하여야 한다(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영상을 녹화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6조 제2항).

③ ○ : 동법 제28조 제1항

p.783 20행과 24행의 ‘ ~ 행정자치부장관 ~ ’ 을 ‘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수정

p.801 12번 박스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공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⑤ 만 70세 이상의 사람
- ⑥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p.1165 14행 ‘② 비상상고는 ~ 비상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법령위반이 ~ 판례의 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를 ‘② 비상상고는 원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므로 원판결에 사실오인을 이유로 비상상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실오인의 결과로 법령위반이 있게 된 경우에 비상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며,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로 수정

## <별책부록 : 핵심정리 & 법령집>

p.50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을 삭제(2013. 4. 5 개정)

## ※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1]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 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대결 2013.4.18, 2013도363 전원합의체).
- [2] 피고인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편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음 사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처 甲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이고, 이와 같이 위헌 ·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위 및 그 이유, 원판결 당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그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는 재판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다룰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1조를 근거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고인이 구금을 당한 데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결 2013. 4. 18.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 [3] 부부간죄 인정 판례(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중 형사소송법 관련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①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고, 불과 며칠 후에 다시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검사 도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흥분하고 화를 내는 등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이기도 하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 ㉣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모멸감, 배신감 등으로 부부 사이의 심리적·정신적 상처가 덧나거나 혼인의 패턴이 촉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가정 내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확고할 때에는 이를 수사나 재판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 ㉤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는 형사공판절차가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검사 또는 법원으로서는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라는 특수성과 함께 이를 피고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적용될 강간죄의 법정형을 아울러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